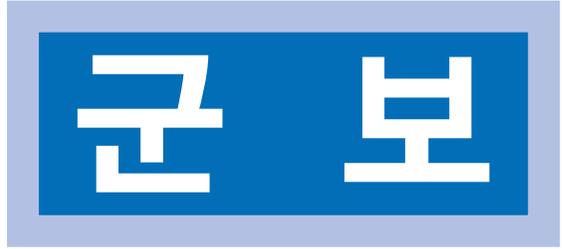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정기 제384호 2017. 9. 15(금)

입 법 예 고

- 장수군 공고 제2017 - 747호 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 장수군 공고 제2017 - 749호 장수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7
- 장수군 공고 제2017 - 750호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43

고 시

- 장수군 고시 제 2017 - 100호 장수군 변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수립 고시 50

공 고

- 장수군 공고 제 2017 - 745호 변암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51
- 장수군 공고 제 2017 - 746호 산서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53
- 장수군 공고 제 2017 - 748호 천천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55
- 장수군 공고 제 2017 - 753호 장수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57

회 람									
--------	--	--	--	--	--	--	--	--	--

발행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228)

장수군 공고 제 2017 - 747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제1항 및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관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라 묘지의 사용기간 및 연장기간 확대
(안 제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3)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1)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주민복지실장)
- 2) 팩 스 : 063-350-2319
- 3)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주민복지실 경로복지팀(전화 063-350-23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묘지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사용허가신청) ①·② (생략)</p> <p>③최초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15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p>	<p>제2조(사용허가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묘지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 할 수 있다.</p>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 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장수군 공고 제 2017 - 749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1. 제정이유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하며,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납세자보호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업무 등(안 제3조 내지 제11조)
- 다. 고충민원의 처리대상 및 절차(안 제12조 내지 제34조)
- 라.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보호활동(안 제35조 내지 제40조)
- 마. 납세자권리현장에 관한 사항(안 제41조 내지 제43조)
- 바. 지방세 제도개선(안 제44조 및 제45조)
- 사. 납세자보호관 활동사항 보고(안 제46조)

3. 금후계획

- 가. 조례(안) 입법예고 : '17. 9월
- 나.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위원회 심의 : '17. 10월
- 다. 장수군 의회 의안 심의·의결 : '17. 10월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3)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1)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재무과장)
- 2) 팩 스 : 063-350-2275
- 3)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재무과 세정팀(전화 063-350-2282)에 문의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 등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현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불합리한 지방세행정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의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민원인 " 이란 세무부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 고충민원 " 이란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 부작위, 소극적인 행위 및 불합리한 지방세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이 침해 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 세무부서 " 란 세무담당부서를 말한다.
4. " 세무부서장 " 이란 세무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세무부서의 추천을 받아 납세자보호관의 적격여부에 대한 감사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 6급 이상
 2. 경력기준 : 당해 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단, 5급의 경우 6급 세무경력 포함)
 3. 청렴성 · 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한 직원으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
- ② 납세자보호담당자는 세무경력이 3년 이상이며, 친절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우선 배치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정 · 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에 관한 사항
4.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제6조(세무부서장의 고충민원처리 특례) ① 고충청구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5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부서장이 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부서장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제3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며, 고충민원을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 중지명령권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중지명령권
 3.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권
 5. 과세자료 열람·제출요구권 및 질문·조사권
 6. 납세자권리현장 규정의 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은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중지·세무조사의 중지·처분의 시정·처분의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세무부서장 등은 과세처분의 중지 등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5호의 권한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하고, 제1항제6호의 권한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한다.

제8조(인사우대 등)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자(이하 "납세자보호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승진 등 인사상에 있어서 우대한다.

- ② 납세자보호관 등의 고충민원처리실적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승진자 선발시 우대한다.
- ③ 납세자보호관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자보호관 등의 교육) 납세자보호관 등은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직무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납세자보호관 등의 복무자세) ① 납세자보호관 등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도 없게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 등은 납세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 등은 지방세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세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는 등 부단히 연구·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납세자보호관실 환경) 납세자보호관실은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자체실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 처리

제1절 통칙

제12조(고충민원 처리준칙) ① 지방세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 등을 경유하지 아니하고도 직권시정이 가능한 세금과 관련된 고충은 신속하게 시정조치 함으로써 국민이 지방세행정에 대하여 신뢰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공무원은 부과된 세금에 대한 사후구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공무원은 지침 등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집행으로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홀히 취급됨으로써 발생하는 고충은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공무원은 지방세행정과 관련된 납세자의 모든 고충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봉사자세를 확고히 하고, 공평무사한 업무 처리로 그 과정과 결과를 누가 보든지 공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처리·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2. 당초의 처분·처리·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3. 당초 처분·처리·요구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4.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당초의 처분이나 처리시 지침·기준 등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적용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6. 부작위·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7. 그 밖에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새로운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처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행정자치부장관·감사원장·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세금관련 고소 및 고발

5.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②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다른 방법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상세히 지도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조(고충민원의 분류)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군수가 조사하거나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2. 군수의 처분·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군수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군수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세무부서간 의견조회·법령자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기한연장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실지조사 등의 소요일수·처리에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고충내용에 대한 군수의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9조(불이익변경금지) 군수는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당초 처분보다 민원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불복대상에서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방세기본법」 제89조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절 고충민원 처리

제21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송) ① 군에 제출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군수의 선람 후 즉시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대상(별지 제1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2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처리방향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23조(해당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4호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당해 고충민원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실지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 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소지하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기타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및 상황을 확인하는 일

제25조(고충민원의 구분)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청구내용과 세무부서 등의 회보내용 및 실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시정요구대상(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권한 관련된 것)
2. 제1호 중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회부대상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송대상
4. 시정불가대상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요구대상으로 한다.

1. 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 조례 및 기본통칙 등에 위배된 처분
3.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4. 민원인이 정당한 증거를 제시한 경우
5. 처분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 고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례, 예규 등으로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상이 되는 사항

③ 제15조의 고충민원분류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송대상으로 한다.

④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부대상으로 한다.

⑤ 고충의 내용이 법령 등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불가대상으로 한다.

제26조(위원회 회부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1.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증을 요하는 경우
2.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

제27조(처리절차) ① 납세자보호관은 직접 처리할 고충민원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직권시정요구대상 고충민원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직권 시정토록 한다.
2. 이송대상 고충민원은 이송사유 및 고충민원서류 일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한다.
3. 위원회 회부대상 고충민원은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4. 시정불가대상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고충내용, 세무부서 의견, 심리의견 등을 기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위원회에 회부할 심의자료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당해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제29조(위원회 구성) ①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납세자보호관
2. 세무부서장
3. 군수가 2년 이상의 지방세 경력을 갖춘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1명
4.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그 밖에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경제사회단체·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임직원 등으로 법률·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세·지방세경력 10년 이상의 전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4명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을 제외한 위원 중 연장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만, 당해 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간사로 임명한다.

제30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서면심의도 가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고충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하는 의결(이하 "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고충내용의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시정하는 의결(이하 "일부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 고충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불가하는 의결(이하 "시정불가 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의결사항을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시정의결(일부시정의결을 포함한다)을 한 고충민원은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z여 시정하도록 한다.
2. 시정불가의결을 한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고충처리결과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한 날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일정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내용에 대한 심의로부터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척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당해 고충내용 심의 시 참석을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민원인 또는 그 친족
2. 민원인의 사용인이거나 그 최근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사람
3. 민원인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관여하였던 사람

⑥ 회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설명한 후 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충분히 거쳐 의결한다.

⑦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납세자보호관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민원인에게 위원회 회부사실·회의일자·의견진술 신청여부를 전화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⑪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 서면으로 하는 경우, 제6항 및 제9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적용한다.

제32조(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고충처리결과통지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에게 시정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구술 또는 전화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상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제33조(사후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 또는 보고한 후 전화로 통지서 수령여부·처리내용의 이해여부·처리결과에 대한 만족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34조(파생자료의 통보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자료에 대하여 과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해당 세무부서 또는 해당실·과·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보호활동

제35조(세무상담의 기본자세) ① 세무상담을 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세금에 대한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청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② 세무상담은 가능한 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훈령·지침 등 관례적이고 획일적인 처리기준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③ 세무상담은 민원인을 고객으로 대우하여 동등한 관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친절한 자세로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제36조(처리기간) 세무상담은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부서등과의 협의처리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협의처리) ① 세무상담 사안 중 세무부서등과의 협이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협의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세무상담 처리 협조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상담협의를 받은 세무부서등의 장은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협의에 응하여 신속한 상담처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납세자 여론 정보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과정에서 인지한 다음 각 호와 같은 납세자의 여론 정보를 수집한다.

1. 지방세행정에 대한 문제점·의견
2. 불합리한 법령·훈령·예규·행정절차 등 지방세행정 제도에 대한 건의의견
3. 탈세·부동산투기·새로운 세원개발 등에 대한 각종 정보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여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세무상담 자료비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에 필요한 법령집·훈령집·예규집·사례집·각종 홍보물·교육자료 등을 비치하여 세무상담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배부받은 자료를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자에 대하여 교육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상담 일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관실 상담일지에 일일 세무상담내용 및 건수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납세자권리현장

제41조(납세자권리현장 제정) ① 군수는 「지방세기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 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현장의 제·개정 등 납세자권리현장에 관한 모든 사항을 분장한다.

제42조(납세자권리현장 규정의 준수) ① 모든 지방세공무원은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현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취지·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납세자권리현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납세자권리현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1. 징수분야 : 고지서 송달(공시송달)의 적정여부, 압류 및 압류재산매각절차의 준수여부,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제한의 적정여부,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 제공 적정여부, 환급기한의 준수여부, 물납신청의 수용여부,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등

2. 조사분야 :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이행여부, 납세자권리현장의 교부여부, 조사연기신청의 수용여부 및 조사연기거부의 적정여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중복조사금지규정의 위반여부, 세무조사결과의 통지여부 등

3. 기타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관서 제출자료에 대한 진실성 추정의 침해여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등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에 대하여 과세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그 심사결과 및 납세자 권리침해 사례 및 구제방법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장 지방세 제도개선

제44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 납세자권리현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 분석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의견을 “지방세행정 제도개선 의견서” (별지 제11호서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상담과정 등에서 수집된 납세자 여론·정보로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하고, 그 밖에 납세자 여론·정보는 세무부서 및 담당 관련부서로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5조(지방세 제도개선 건의수렴)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지방세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등 납세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지방세행정 제도개선 건의내용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검토의견 및 처리방향 등을 납세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7장 보고

제46조(보고) 군수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전라북도지사에게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건수, 세무상담실적,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는 설치한 때부터 시행하되, 제3장제2절중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최초 구성된 때부터 시행한다.

②(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 분부터 적용한다.

장수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1	과세처분·세무조사 중지명령 및 서정·소명요구서	
2	고충처리 기한 연장 통지서	
3	고충민원 신청서	
4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5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	
6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	
7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	
8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	
9	세무상담 처리 협조전	
10	납세자권리현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	
11	지방세행정 제도개선 의견서	
12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과세처분·세무조사 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

문서번호 :	담당자	납세자 보호관	실·과 장	부군수	군 수
수 신 : 세무부서장					
제 목 :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및 시정·소명요구서					

귀 세무부서의 아래 (예상) 과세처분·세무조사에 대하여 과세처분중지명령·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요구·소명요구를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예상)과세처분
또는 세무조사내
용

과세처분·세무
조사중지또는시정
요구·소명요구사
유

과세처분·세무
조사중지내용또는
시정요구·소명
요구 내용

년 월 일

○○○ 실·과장 (인)

[별지 제2호서식]

고충처리기한연장통지서

민 원 인	주 소 (사 업 장)			상 호	
	성 명		신 청 일 자	. . .	
당 초 처 리 기 한			처 리 예 정 기 한		
기한연장사유					
실지조사 등의 소요 예상일수					
<p>귀하가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위와 같은 사유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여 부득이 처리기한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장 수 군 수 (인)</p>					
<p>이 통지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 (전화번호 : 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 54g/m²)

[별지 제3호서식]

고 충 민 원 신 청 서

민 원 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고
충
내
용

※고충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2.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작성자)

장 수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549/m²)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문서번호 :

담당자

납세자
보호관

실·과장

수 신 : 세무부서장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세무부서의 의견을 조회하니 . . . 까지 당
초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 . .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 원 인	주 소 (사업장)		전화 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고
충
내
용

첨부 :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년 월 일

○○○ 실·과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54g/m²)

[별지 제5호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담당자	팀장	재무과장
수 신 : 납세자보호관			
참 조 :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아래 민원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을 아래와 같이 의견(직권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민 원 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고 충 내 용	
------------------	--

의 견 및 처 리 내 용	
---------------------------------	--

첨부 : 결정결의서 등 관계증빙서류.

년 월 일

재 무 과 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54g/m²)

[별지 제6호서식]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자료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자료					
	담당자	납세자 보호관	실·과 장	부군수	군 수
(접수번호 :)					
민 원 인	주 소 (사업장)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고충요지					
처분내용					
주무과 의 견					
심 리 · 판 단	가. 쟁 점 나. 사실관계 다. 관련법령 라. 심리의견 ※별지작성 가능				
첨부서류 : 1. 2.					

210mm×297mm(일반용지 549/m²)

[별지 제8호서식]

고충 민원 처리 결과 통지서

문 서 번 호		발 송 일 자		. . .
민 원 인	주 소 (사 업 장)			
	상 호	성 명		
	신 청 일 자	. . .	처 리 일 자	. . .
고 충 내 용				
처 리 내 용				
장 수 군 수 (인)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 ○○○ (전화번호:)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54g/m²)

[별지 제9호서식]

세무상담 처리 협조전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세무상담이 제기되어 귀 세무부서에 이첩하니, 상담내용을 검토 후 민원인에게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제목			처리기한	

상
담
요
지

상담자 성명: 전화번호 :

○○○ 실·과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54g/m²)

[별지 제10호서식]

납세자권리현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

		담당자	납세자 보호관	실·과 장	부군수	군 수
작성일자 :						
구분	주요 심사항목	심사결과				
징수분 야	1. 고지서(공시송달, 독촉장송달 포함)송달 적정여부 2. 압류·압류재산매각절차 준수여부 3. 출국금지·여권발급제한 적정여부 4.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업자 제공 적정여부 5. 환급기한 준수여부, 물납수용여부등					
세원관 리분야	1. 고지전과세자료처리 결과통지절차 준수여부 2.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발송절차 준수여부 3. 기 타					
조사분 야	1. 세무조사 사전통지 이행여부 및 납세자권리현장 교부여부 2. 조사연기신청 수용여부 및 거부 적정여부 3.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여부 4. 중복조사금지규정 위반여부 5. 세무조사결과 통지여부 6. 기 타					
기타	1. 납세자의 성실성 및 세무관서 제출자료에 대한 진실성 추정 침해여부 2.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권리 침해여부 3.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 침해여부 4.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 침해여부					
첨 부	납세자 권리침해 사례 및 구제방법					

210mm×297mm(일반용지 54g/m²)

[별지 제11호서식]

지방세행정 제도개선 의견서

담당자	납세자 보호관	실·과 장	부군수	군 수

작성일자 :

제 목 :

현 황	
문 제 점	
개 선 방 안	
기 대 효 과	

210mm×297mm(일반용지 54g/m²)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장수군 공고 제 2017 - 750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부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 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이바지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성실납세자 등 선정 기준, 선정 방법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 다. 명부관리 및 선정 취소 규정을 정함(안 제6조, 제7조)

3. 금후계획

- 가. 조례(안) 입법예고 : '17. 9월
- 나. 장수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 '17. 10월
- 다. 장수군 의회 의안 심의·의결 : '17. 10월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3)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1)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재무과장)
- 2) 팩 스 : 063-350-2275
- 3)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재무과 세정팀(전화 063-350-2282)에 문의바랍니다.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최근 1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500만원 이상인 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선정 기준) 장수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 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장수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일 것
2. 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 및 징수유예가 없을 것
3.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

제4조(선정 방법)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1.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
2. 3인 이하를 선정
3.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납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성실납세자증 교부
2.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서 발행한 장수사랑상품권 지급
3. 장수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매년 협의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4. 군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1년간 면제 또는 유예
5. 군 홈페이지 등에 성실납세자 등 명단 공개(동의자에 한함)

②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1년 동안으로 한다.

제6조(명부 관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선정 취소)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 또는 체납 등으로 제3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군수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성 실 납 세 자 증

○ 제 20 - 호

○ 성명(법인명) :

○ 주 소 :

○ 유효기간 : 20 . . . ~ 20 . . . (1년)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직인

장수군 고시 제 2017 - 100호

장수군 번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수립 고시

번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장 수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번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촌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테마를 살려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거점으로서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
3. 총사업비 : 4,714백만원[국비3,300(70%) 도비 707(15%) 군비 707(15%)]
4.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웰컴센터조성, 물빛공원정비, Slow Cafe 프로젝트
 - 지역경관개선 : 요천수변 문화공원, Slow Way 프로젝트
 - 지역역량강화 : 교육, 견학, 컨설팅, 홍보마케팅, 마을경영지원 등
 - 제 경 비 : 기본계획비,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5. 시 행 자 : 장수군수(위탁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6. 시행기간 : 2017. 09. 01. ~ 2019. 12. 31

장수군 공고 제 2017 - 745호

번암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번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사용의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용개시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장 수 군 수

1. 사용을 개시하는 공공하수도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사용개시일	비고
번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장수군 번암면 장수로 38-31	500톤/일 L=14.763km	2017.9.7.	

2.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시 설 명	처리구역(km ²)	하수배 제방식	처 리 공 법	방류수역	비고
번암 공공하수처리 시설	1.12	분류식	선회와류식 SBR	요천 → 섬진강	

3. 설계유입수질 및 목표방류수질

(단위:mg/l)

구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부유 물질량 (SS)	총질소 (T-N)	총인 (T-P)	대장균수 (개/ml)
유입수질	175.0	141.0	206.0	33.3	4.8	200,000
방류수질	4.0	14.6	4.6	13.6	0.2	200이하

4.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는 【하수도법】 및 【장수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함.
- 나.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장수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거 장수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환경위생과 하수도팀(063-350-23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공고 제 2017 - 746호

산서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산서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사용의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용개시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장 수 군 수

1. 사용을 개시하는 공공하수도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사용개시일	비고
산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장수군 산서면 사상리 853번지 일원	800톤/일 L=10.418km	2017.9.7.	

2.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시 설 명	처리구역(km ²)	하수배 제방식	처 리 공 법	방류수역	비고
산서 공공하수처리 시설	2.9	분류식	선회와류식 SBR	오수천 ⇒ 섬진강	

3. 설계유입수질 및 목표방류수질

(단위:mg/ℓ)

구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부유 물질량 (SS)	총질소 (T-N)	총인 (T-P)	대장균수 (개/ml)
유입수질	175.0	141.0	206.0	33.4	4.8	200,000
방류수질	4.0	14.6	4.6	13.8	0.2	200이하

4.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는 【하수도법】 및 【장수군 하수도 사용조례】 에 의함.
- 나.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장수군 하수도 사용조례】 에 의거 장수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환경위생과 하수도팀(063-350-23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공고 제 2017 - 748호

천천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천천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사용의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용개시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장 수 군 수

1. 사용을 개시하는 공공하수도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사용개시일	비고
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장수군 천천면 방어령길 64 일원	500톤/일 L=12.759km	2017.9.7.	

2.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시 설 명	처리구역(km ²)	하수배 제방식	처 리 공 법	방류수역	비고
천천 공공하수처리 시설	1.6	분류식	선회와류식 SBR	금강	

3. 설계유입수질 및 목표방류수질

(단위:mg/ℓ)

구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부유 물질량 (SS)	총질소 (T-N)	총인 (T-P)	대장균수 (개/ml)
유입수질	160.0	140.0	170.0	37.6	5.2	60,000
방류수질	4.8	19.8	9.8	16.8	0.18	200이하

4.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는 【하수도법】 및 【장수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함.
- 나.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장수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거 장수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환경위생과 하수도팀(063-350-23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공고 제 2017- 753호

장수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장수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장 수 군 수

1. 인가신청의 요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장수군 장수읍 · 장계면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명 칭	사업규모	비 고
군계획시설사업(장수)	장수 북동로 개설사업 (소로3-26,소로3-32)	도로개설 L=367m,B=6~7.5m	
군계획시설사업(장계)	장계 남동로 개설사업 (소로3-17)	도로개설 L=183m,B=6~6.0m	

다.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장수군수
- 주 소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9.12.30.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바.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군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장수군청 건설경제과

3. 의견제출 : 사업 시행지구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건설경제과(350-24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가. 장수 북동로 개설사업(소로3-26,3-3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장수읍 장수리	430-5 (430-13)	답	1,492	383	김광철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48-9		
2	장수읍 장수리	434	답	109	109	백재식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45		
3	장수읍 장수리	433 (433-7)	답	151	151	임영자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04		
4	장수읍 장수리	430-12 (430-14)	답	462	123	박정금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28		
5	장수읍 장수리	447 (447-4) (447-5)	답	915	171	이재남	전주시 덕진구 인후5길 15		
6	장수읍 장수리	447-3 (447-6)	답	1,430	178	이재남	전주시 덕진구 인후5길 15		
7	장수읍 장수리	448-4 (448-9)	답	752	111	권대승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36길 15-8 102호(공간행복)		
8	장수읍 장수리	449-1 (449-14)	답	1,630	303	김재순	장수군 천천면 옥자동길 187-3		
9	장수읍 장수리	462-6 (462-9)	대	286	49	우태곤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 2로 142,101호(풍동)		
10	장수읍 장수리	462-7 (462-10)	답	5	1	곽한진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10 603동 901호		
11	장수읍 장수리	445 (445-3) (445-5)	답	2,083	214	박호정	천안시 동남구 일봉로 34 101동 403호(두레현대아파트 1단지)		
12	장수읍 장수리	449-6 (449-16)	대	674	41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13	장수읍 장수리	437-2 (437-3)	답	1,833	345	김미라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봉천우성 APT 104동 2009호		
14	장수읍 장수리	439-5 (439-10)	답	2,332	16	김해운	장수군 장수읍 노하2길 8-7		
15	장수읍 장수리	439-6 (439-11)	답	263	142	김해운	장수군 장수읍 노하2길 8-7		

나. 장계 남동로 개설사업(소로3-1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장계면 장계리	433-1	대	155	155	오창민	서울시 양천구 신정도 337 목동2차APT 203-706		
2	장계면 장계리	433-6	대	123	123	오창민	서울시 양천구 신정도 337 목동2차APT 203-706		
3	장계면 장계리	436-5 (436-4)	대	211	5	김영환	경기도 안산시 와동 808-9		
4	장계면 장계리	477-9 (477-1)	대	566	190	최금돌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435-1		
5	장계면 장계리	478-4 (478)	대	562	1	김순태	장수군 장계면 장계1길 18		
6	장계면 장계리	478-5 (478-2)	도	69	6	김영훈	장수군 장계면 장계1길 18		
7	계남면 호덕리	553-5 (553-1)	답	3,539	585	장수군	장수읍 장수읍 호비로 10		
8	계남면 호덕리	553-7 (553-2)	도	165	38	오종권	장계면 장계리 433-1		

군보발행안내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게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게재 의뢰 방법 :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